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임차 유지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기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꼭 여쭙어 보시는 내용으로 차량관련 구입(매입), 임차 및 유지비용인 주유비, 수리비 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부가세환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로 업무용 차량의 범위, 차량 구입과 임차 및 유지비용(차량주유비 등), 리스(렌트)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문의가 많아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RALLY MAGIC - IMG_4335 ed+cr by [greekadman](#) ⓘ ⓘ ⓘ

자주 혼동하는 이유 !

첫번째, 업무용과 영업용의 용어를 착각

업무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잘못하시고,
비업무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이 맞습니다.

▶ 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두번째, 소형자동차의 기준 착각

* 세법에서의 승용자동차의 범위

- 8 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경차 제외)
- 125cc 초과 2 른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소형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500cc 미만 : 소형승용차, 2,000cc 미만 중형승용차,
2,000cc 초과 대형 승용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위의 세법과 관련한 소형승용차 기준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무용 자동차와 관련된 세무,회계

구분	내용	관련법규
영업용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 17 조제 2 항 시행령 제 60 조
소형승용차의 범위	정원 8 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제 1 조 제 2 항 제 3 호 (참조 하단 소형승용차기준)
직원 차량지원비 (자가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함 (월 20 만원) ▶ 참조 : 혼동하기 쉬운 급여의 비과세항목	소득세법 제 12 조

▶ [개인카드영수증 회사증빙처리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 ?](#)

많이 혼동하는 매입세액 공제

■ 영업용(운수업 등)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데 ?

-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0 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 78 조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의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범위
소형승용차인 경우	영업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소형승용차 이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 제외 항목 이외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아닌 경우

■ 소형승용차가 아니면 모두 매입세액 환급이 되는건가요 ?

- 아닙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 17 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 포함)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 78 조)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 등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이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 혼동하기 쉬운 사례

질의 사례	답변 내용
호텔업 사업자가 고객 편의를 위해 소형승용차를 렌터카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비에 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의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 인승 승합차 또는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단 소형승용차 및 공제대상 여부 참조)
주차장 또는 쇼핑몰 등의 유료 주차장에서 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가능 부가 46015-3922, 2000.11.28

■ 소형승용차 예시 (2010 년 기준)

회사명	명칭	정원	공제	차종	종류
현대자동차	투싼 ix	5	X	승용	
	싼타페	7	X	승용	
	베라크루즈	7	X	승용	
	스타렉스-왜건	11, 12,	O	승합	
	스타렉스-밴	3, 5	O	화물	
기아자동차	모닝-밴, 모닝	2, 5	O	화물, 승용	경차
	뉴카렌스	7	X	승용	
	카니발 R	9, 11	O	승용, 승합	
	카니발 R-리무진	7	X	승용	
	카니발 R-리무진	11	O	승합	
	스포티지 R	5	X	승용	
	쏘렌토 R	7	X	승용	
	모하비	7	X	승용	
르노삼성자동차	QM5	5	X	승용	
GM 대우자동차	마티즈-밴, 마티즈	2, 5	O	화물, 승용	경차
	원스톱	5, 7	X	승용	
	다마스	2, 5, 7	O	화물, 승합	경차
	라보	2	O	화물	경차
쌍용자동차	슈퍼 렉스턴	5, 7	X	승용	
	뉴로디우스	9	O	승용	

주 1. 2001 년 부터 10 인이하는 승용차로 분류함

주 2. 2010 년 5 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신차 판매되는 차량 기준

세무정보 관련 글모음

최신 세무 회계 정보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팁, 이것만은 꼭 알자 !](#)
- [2010 년 2/4 분기 세무달력, 주요세무정보요약 plus](#)
- [2010 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항목](#)
- [직장인의 비과세수당 및 출산.보육수당 활용팁](#)
- [\[절세\]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절세 Tip](#)

세무회계 및 지식 정보

- [계정과목별 용어정의 \(재무제표 양식별\)](#)
- [경리회계 기초 - 06. 비용계정의 계정과목 구성](#)
- [접대비와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 회계 분개만 잘해도 절세왕이 된다면 ?](#)
- [세무상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무엇일까 ?](#)
- [\[엑셀팁\] 엑셀 필드형식 변환을 10 초만에 똑딱하는 방법](#)